



보건복지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의료법」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고지하고 고지·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.
3.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명시한 책자 등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.
4.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고 특히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기준도 초과하여 징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도 취지에 맞게 각 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준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아울러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는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확보차원에서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금액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비급여 고지 등 관련 법령현황.
2. 관련 고시. 끝.

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한방병원협회장, 대한치과병원협회장,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
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한의사협회장

주무관

장태준

행정사무관

신명희

의료보장관리 전결 2018. 4. 20.

과장

고형우

협조자

시행 의료보장관리과-842 (2018. 4. 20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4층 건강 / http://www.mohw.go.kr
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

전화번호 044-202-2682 팩스번호 044-202-3983 / jtj6101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